

## 7.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 5 조에 규정된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칭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부 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 내용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3 조] 조직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원이 각각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위원 중에서 간사 1 명을 선출한다.
2. 위원장은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회의의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시에 의장을 맡는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계 등을 담당한다.

### [제 4 조] 회의

1.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매년 2 차례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제 5 조] 재정

관리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회에 청구할 수 있다.

**[제 6 조] 사무 행정 요원**

1.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실무 집행에 필요한 사무 행정 요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차 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3차 개정된 규칙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5. 4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6. 5차 개정된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